

[재)음성군장학회 선임직 임원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에서는 미래 우수 인재를 양성, 발굴하고 (재)음성군장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선임직(비상근 무보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 이사장



I 모집 분야 및 인원

공모직위	근무형태	인원	임기	직무내용
선임직 이사	비상근 무보수	1명	(4년 / 연임 가능)	이사회로 구성원으로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의결

*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가능

* 세부 직무내용은 [붙임 6] 직무수행요건 참조

II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수준)

-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
- 재단법인 운영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춘 자
- 전략적 사고 및 비전 제시능력을 갖춘 자
- 경영에 대한 분석·판단력을 갖춘 자
- 기타 이사장이 재단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III

결격사유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제6항에 해당하는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연퇴직

IV 지원 서류 접수

1. 전형일정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26. 4. 9.(목) ~ 4. 24.(금) 18:00까지	
인사위원회 심사	'26. 5. 15.(금) (예정)	서류심사
이사회 개최	'26. 6. 17.(수) (예정)	신임 이사 선임(안) 심의·의결
결과 발표	'26. 6. 18.(목) (예정)	개별 통보
교육청 승인	'26. 6. 22.(월) 이후	

2. 지원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4. 9.(목) ~ 4. 24.(금) 18:00까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① 방문: 음성군청 평생학습과 인재양성팀(☎043-871-3154)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에 한함

② 등기우편: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평생학습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으로 접수 시 반드시 채단 사무국으로 접수 확인 요망

3.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붙임 1] 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서식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4]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

바. 최종학력 증명서, 근무처별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가)~(마) 항목은 (재)음성군장학회에서 제공한 소정양식만 인정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V

심사 및 결과 발표

1. 심사 방법

○ 1차: 서류심사(결격여부 등 자격기준 적격 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음성군장학회 임시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 총 100점 만점으로 4개 항목을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인사위원회 투표로 순위 결정

연번	심사항목	배점	비고
1	경력사항	25점	
2	경영능력	25점	
3	재단 발전 기여가능성	25점	
4	재단법인 임원으로서의 자질	25점	

○ 2차: (재)음성군장학회 이사회 심의·의결

2. 결과발표: 이사회 심의·의결 후 개별 통보

VI 기타사항

1.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임이 결정되었더라도 별도의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취임이 가능함.
2.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임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모자가 모집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4. 응모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본 재단법인은 책임지지 않음.
5.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함.
6.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음성군장학회 사무국(☎043-871-3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재)음성군장학회 직무수행요건 1부. 끝.